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창욱 의원 외 15명)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9
----------	-----

발의연월일 : 2024. 2. 16.

발 의 자 : 박창욱·차주식·최병준
황명강·정근수·이철구
박선하·최덕규·노성환
백순창·김창기·권광택
임병하·서석영·신효광
남영숙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짐에 따라 우박,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농산물의 늘어나고 있으며, 재해피해로 인한 저품질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폐기되고 있는 실정
- 이에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재해피해농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마. 재해피해 긴급대책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154, '24. 2. 5.)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2002, '24. 2. 16.)
- 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혁신담당관(정책기획관-2002, '24. 2. 16.)
- 라. 해당부서 의견: 검토완료
 - 친환경농업과(정책기획관-2002, '24. 2. 16.)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의 불가피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3. 재해피해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복구 비용

2. 재해피해 농산물 매입 및 시장격리

3. 긴급경영자금

4. 재해피해 예방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것

2. 도 관할 구역 내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재해피해 긴급대책반)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피해농산물 긴급대책반(이하 “긴급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

3. 지원 대상 작물 선정

4. 지원 방법 및 추진일정 협의

② 긴급대책반의 장은 농작물재해피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긴급대책반의 구성원은 관련기관 및 피해 시·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긴급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피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실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긴급대책반 구성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재해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재해유형 및 피해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요 및 지출 규모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친환경농업과 지방농업주사보 권순우(054-880-3367)



경 상 북 도



수신 친환경농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친환경농업과-3253(2024. 2.14.)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례안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재해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재해피해농가 지원 사업 추진 등에 비용이 수반 될 것으로 추정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다만, 해당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 발생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주무관 **김오순** 예산총괄담당 **류가** 예산담당관 **윤지향** 연일 2024. 2. 14.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211 (2024. 2. 14.) 접수 친환경농업과-3313 (2024. 2. 15.)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49 / jcu271@korea.kr / 대국민 공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측입니다.